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건설업체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경유)

제목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적정 제품 사용 안내

1.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업체에서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설치 시 성능기준을 확인하여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는 지도 현장에서 적정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김승이

행정사무관

이은상

산업안전기준 전결 2024. 1. 16.

과장

박원아

협조자

시행 산업안전기준과-181

(2024. 1. 16.)

접수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11동(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 www.moel.go.kr

전화번호 044-202-8855

팩스번호 044-202-8092

/ eee0119@korea.kr

/ 대한민국 공개